

지방세 조견표 (2022년 1월 현재)

취득세 : 취득 당시의 기액, 단, 연부취득시는 연부금액

과세 대상		과세표준 및 세율(1.~6. 5% 내 가감 가능)	
1. 부동산 표준세율	① 상속·농지·외의 것 ② 상속·외의 무상취득(특정 비영리사업자 28/1,000) ③ 원시취득 ④ 품유물의 분할·합유 및 충유물의 분할 ⑤ 주택유상거래: 주택유상거래 69억원 이하 주택유상거래 69억원 초과 99억원 이하 주택유상거래 99억원 초과 ⑥ 그 밖의 취득: 농지·농지·외의 것	23/1,000 ~ 28/1,000 35/1,000 28/1,000 23/1,000 10/1,000 (취득기액÷3억원× 2~3)×1/100 30/1,000 30/1,000 30/1,000 ~ 40/1,000	
2. 선박	① 상속 ② 상속·외의 무상취득 ③ 원시취득, 수입 및 주문건조 ④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	25/1,000 30/1,000 20.2/1,000 30/1,000	
3. 차량	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: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(경자동차의 경우 40/1,000) ② 125cc 이하 또는 최고경속 출력 12kw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① 및 ② 외의 자동차: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i) 비영업용(경자동차의 경우) ii) 영업용 ④ ①~③ 외의 차량	70/1,000 20/1,000 50/1,000(40/1,000) 40/1,000 20/1,000	
4. 기계장비	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(건설기계 외의 기계장비)	30/1,000(20/1,000)	
5. 항공기	①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의 항공기 ② 그 밖의 항공기(최대이륙중량 5,700킬로그램 이상 항공기)	20/1,000 20.2/1,000(20.1/1,000)	
6. 입찰, 광업권, 어업권, 양식업권, 골프·승마·콘도미니엄·오토·종합형제육시설이용 회원권	20/1,000		
7. 괴밀역제권역 내 본점 등 신축·증축 2년 이내 법인	68/1,000 84/1,000		
8. 괴밀역제권역 내 장당 신·증설 5년 이내 법인	84/1,000 84/1,000		
9. 대도시 내 법인 설립 5년 이내	① 본점·주사무소 승계취득 ② 본점·주사무소 이외 부동산 승계취득 ③ 본점·주사무소 이외 부동산 신축	80/1,000 80/1,000 44/1,000	
10. 사자성재산(고급주택, 고급오피장 등) 취득	표준세율+80/1,000		
11. 다주택자 중과세	① 1세대 2주택 ② 1세대 3주택 이상 ③ 법인	8/100 12/100 12/100	
12. 환매, 1가구상속, 합병, 이혼재산분할, 건물이전 등	표준세율-20/1,000		
13. 개수, 과정주주, 레저시설 등	20/1,000		

* 신고 및 납부기한: 취득일로부터 60일

* 상속·실종: 6개월,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: 9개월, 상속·외 무상취득: 3개월(2023년 시행)

* 신고기한만료일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50%, 3개월 이내 신고시 30%, 6개월 이내 신고시 20% 감면

등록분 등록면허세 : 등기·등록 당시의 기액 또는 차권 등의 금액

과세 대상		과세표준 및 세율	
1. 부동산등기 표준세율 (50% 내 가감 가능)	① 소유권 보존 등기 ② 소유권의 이전 등기 ③ 소유권 외 불과·임차권 설정 및 이전 ④ 경매신청·기밀류·가처분 및 가동기 ⑤ 그 밖의 등기	8/1,000 우상: 20/1,000 (주택: 취득세율의 50%) 무상: 15/1,000(상속 8/1,000) 2/1,000 2/1,000 건당 6,000원	
2. 선박 등기·등록	① 소유권보존 ② 저당권 설정·이전 ③ 그 밖의 등기·등록	0.2/1,000 채권금액의 2/1,000 건당 15,000원	
3. 차량 등록	① 소유권의 등록 i)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ii) 그 밖의 차량 ② 저당권 설정·이전 등록 ③ 그 밖의 등록	50/1,000(경자동차 20/1,000) 30/1,000(20/10,000)~20/1,000 채권금액의 2/1,000 건당 15,000원	
4. 기계장비 등록	① 소유권의 등록 ② 저당권 설정·이전 등록 ③ 그 밖의 등록	10/1,000 채권금액의 2/1,000 건당 10,000원	
5. 공장재단 및 광업 재단 등기	① 저당권 설정·이전 등기 ②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	채권금액의 1/1,000 건당 9,000원	
6. 동산담보권 및 재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 담보권 등록	① 담보권 설정·이전 등기·등록 ② 그 밖의 등기·등록	채권금액의 1/1,000 건당 9,000원	
7. 법인 등기	① 상사회사,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·설립과 납입 ··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②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·설립과 납입 ··출자증액 또는 재산증액의 증가 ③ 자산재평가액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증액의 증가 및 출자증액 또는 자산증액의 증가(자본전입의 경우 제외) ④ 분할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⑤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⑥ 그 밖의 등기	출자기액의 4/1,000 (한국 112,500원) 출자기액의 4/1,000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증액의 2/1,000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증액의 2/1,000 증가한 금액의 1/1,000 건당 112,500원 건당 40,200원 건당 40,200원	
8. 상호 등기	①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②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③ 선박권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	건당 78,700원 건당 12,000원 건당 12,000원	

* 신고 및 납부기한: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

* 제재 - 무신고가산세(20%), 과소신고가산세(10%), 사기·부정미신고가산세(40%)
- 미납부에 따른 과소납부액×가산율(0.025%)×납부지연일자=납부지연가산세(75% 한도)

면허분 등록면허세 : 면허의 종류(지방세법 시행령 별표)별 과세

구 분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	제5종
인구 50만 이상 시	67,500원	54,000원	40,500원	27,000원	18,000원
그 밖의 시	45,000원	34,000원	22,500원	15,000원	7,500원
군	27,000원	18,000원	12,000원	9,000원	4,500원

* 미납부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요구

레저세

과 세 표 준	세율
승자부표권·승자부표권 등의 발매금액 총액	10%

* 제재 - 의무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(20%), 과소신고가산세(10%), 사기·부정미신고가산세(40%) 등
- 납부불이행시 미납부에 따른 과소납부액×가산율(0.025%)×납부지연일자=납부지연가산세(75% 한도)
-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50%, 3개월 이내 30%, 6개월 이내 신고시 20% 감면
- 장부비지 불이행시 산출세액의 10% 가산세

담배소비세

과 세 표 준	세율	
담배의 개별수 또는 중량·니코틴 용액의 용량	① 피우는 담배 i) 제1종: 길런 ii) 제2종: 파이프담배 iii) 제3종: 업궐련 iv) 제4종: 각련 v) 제5종: 전자담배 ② 물담배 ③ 씹거나 머금는 담배 ④ 납새 또는 담배	20개비당 1,007원 1그램당 36원 1그램당 103원 1그램당 36원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(궐련형): 20개비당 897원, 기타: 1그램당 88원 1그램당 715원 1그램당 364원 1그램당 26원
제조세율(30% 내 가감 조정 가능)		

* 신고 및 납부기한: 다음 달 20일(특별정수: 다음 달 10일)

* 제재 - 신고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(20%), 과소신고가산세(10%), 사기·부정미신고가산세(40%)

- 납부불이행시 미납부에 따른 과소납부액×가산율(0.025%)×납부지연일자=납부지연가산세(75% 한도)

- 미신고·영업·폐업 등: 가산세 10%

- 미신고·판매 등: 가산세 30%

지방세 소비세

과 세 표 준	세율
부가가치세 부수세액-부가가치세 금액+공제세액+부가가치세 가산세	2022년 23.7%, 2023년부터 25.3%
다음 달 20일까지 국세청장·관세청장 → 시·도지사(행안부장관 지정)에 납입 → 5일 이내 → 전국 17개 시도 안부	
* 안부기준	
① 5%: 시도별 소비지수·가중치 비례(2022년부터 15%) ② 6%: 취득세·지방교육세·지방교육재정교부금·감소액 비례안부 ③ 10%: 국가균형발전특별법·회계법·부가가치세·부가가치세	
④ 4.3%: 국가보조사업 전환 보전(2027년부터 2.58% 소비지수로 광역단체, 1.72% 인구 및 역세정지수로 기초단체 배분)	

(주)조세통람 편
정가 110,000원

전동흔·최선재 공저
정가 100,000원

이영우 저
정가 100,000원

신재열·노희구·김지암 공저
정가 95,000원

이철재·이현범 공저
정가 95,000원

주 민 세

과 세 표 준	세율	
9. 광업권 등록	① 광업권 설정(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 한 경우 포함) ② 광업권의 변경 i) 증구(增區) 또는 증감구(增減區) ii) 감구(減區) ③ 광업권의 이전 i) 상속 ii)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④ 그 밖의 등록	건당 135,000원 건당 66,500원 건당 15,000원 건당 26,200원 건당 90,000원 건당 12,000원
10. 조광권 등록	① 조광권 설정(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 한 경우 포함) ② 조광권의 이전 i) 상속 ii)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③ 그 밖의 등록	건당 135,000원 건당 26,200원 건당 90,000원 건당 12,000원
11. 어업권·양식업권 등록	① 어업권·양식업권의 이전 i)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② 어업권·양식업권 지분의 이전 i) 상속 ii)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③ 어업권·양식업권의 등록	건당 6,000원 / 건당 40,200원 건당 3,000원 / 건당 21,000원 건당 9,000원
12. 저작권, 배터지 발행권, 출판권, 저작인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저작권법 제4조(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		